

군포도시공사 제1회 이사회에서 의결되고 군포시장 승인을 받은 「군포도시공사 기간제 및 정년보장 전환근로자 관리 규정」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군포도시공사 사장직무대행 김 상



2023년 3월 14일

군포도시공사 규정 제 107 호

군포도시공사 기간제 및 정년보장 전환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

군포도시공사 기간제 및 정년보장 전환근로자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2조(특별휴가) 제1항과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항 중 “업무직근로자 관리규정 별표 1의 기준”을 “취업규정 별표 2의 기준에 의한 청원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.”로 한다

제4항 중 제1호부터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임신기간 11주 이내 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
2.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 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
3. 임신 16주 이상 21주 이내 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
4. 임신 22주 이상 27주 이내 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

5. 임신 28주 이상 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

제20조(근무성적 평정) 제1항의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기간제 및 전환근로자 근무성적 평정서

● 평정대상자

소 속	성 명	생년월일	담당업무	현 계약일	계약 만료일

1. 근무성적 평정(90%)

※ 업무목표의 달성도와 앞쪽의 기재사항 및 평소관찰결과 등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다음과 같이 평정점을 부여합니다

- 각 평정요소별로 탁월·우수·보통·미흡·불량의 5단계로 평정함.(해당란에 ○표)
- 직무수행태도는 만점을 부여한 뒤 임용권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평정자가 감점 평정함

① 근 무 성 적 (90%)	평정요소		실 적 의 질					실 적 의 양					적 시 성					업 무 개 선 도				
	평정점		탁월	우수	보통	미흡	불량	탁월	우수	보통	미흡	불량	탁월	우수	보통	미흡	불량	탁월	우수	보통	미흡	불량
	1차평정자 (30%)		7.5	6.0	4.5	3.0	1.5	7.5	6.0	4.5	3.0	1.5	7.5	6.0	4.5	3.0	1.5	7.5	6.0	4.5	3.0	1.5
	2차평정자 (30%)		7.5	6.0	4.5	3.0	1.5	7.5	6.0	4.5	3.0	1.5	7.5	6.0	4.5	3.0	1.5	7.5	6.0	4.5	3.0	1.5
	확인자 (30%)		7.5	6.0	4.5	3.0	1.5	7.5	6.0	4.5	3.0	1.5	7.5	6.0	4.5	3.0	1.5	7.5	6.0	4.5	3.0	1.5
평 정 점																						

2. 직무수행태도평정 감점 해당사항(평정대상기간중의 것만 기재)

○ 지 각()회 - 감점 2점	○ 경고 또는 주의()회 - 감점 5점
○ 무 단 결 근()일 - 감점 5점	○ 대 민 불 친 절()회 - 감점 3점
○ 무 단 조 퇴()회 - 감점 3점	
○ 장시간무단이석()회 - 감점 3점	

② 직무수행태도(10%)	기준점 : 10점	감 점 : 점	평정점 : 점
---------------	-----------	---------	---------

3. 종합 평정점

종합 평정점 (평정점 합계 ①+②)	점
---------------------	---

4. 종합평정 의견

1차 평정자 의 견	직위 :	성명 :	(인/서명)
2차 평정자 의 견	직위 :	성명 :	(인/서명)
확인자	직위 :	성명 :	(인/서명)

부 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경 영 지 원 부
입 안 자	직 위 성 명	경 영 지 원 부 장 곽 성 우
	직 위 성 명	인 사 총 무 팀 장 신 재 두
	담당자 성명 (전 화)	현 진 환 (3 9 0 - 7 6 0 9)

신·구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2조(특별휴가) ① 근로자는 본인이 결혼하거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<u>업무직근로자관리규정 별표 1의 기준에 의한</u> <u>청원휴가</u>를 신청할 수 있다. ④ (생 략) 1.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: <u>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</u> 2.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: <u>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</u> 3.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: <u>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</u> 4.~5. (신 설)	제32조(특별휴가) ① ----- -----<u>취업규정 별표2의 기준에 의한</u> <u>청원휴가</u>를 신청할 수 있다. ④ (현행과 같음) 1. 임신기간 11주 이내 : <u>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</u> 2.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 : <u>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</u> 3. 임신 16주 이상 21주 이내 : <u>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</u> 4. 임신 22주 이상 27주 이내 : <u>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</u> 5. 임신 28주 이상 : <u>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</u>

신·구 조문대비표

현 행

[별지 제3호 서식]

기간제 및 전환근로자 근무성적 평정서

● 평정대상자

소 속	성 명	생년월일	담당업무	현 계약일	계약 만료일

1. 근무성적 평정(90%)

※ 업무목표의 달성도와 앞쪽의 기재사항 및 평소관찰결과 등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다음과 같이 평정점을 부여합니다

- 각 평정요소별로 탁월·우수·보통·미흡·불량의 5단계로 평정함.(해당란에 ○표)
- 직무수행태도는 만점을 부여한 뒤 임용권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평정자가 감점 평정함

① 근무 실 적 (90%)	평정요소		실 적 의 질					실 적 의 양					적 시 성					업 무 개 선 도				
	평정점																					
	1차평정자 (30%)		탁월	우수	보통	미흡	불량	탁월	우수	보통	미흡	불량	탁월	우수	보통	미흡	불량	탁월	우수	보통	미흡	불량
			5	4	3	2	1	5	4	3	2	1	5	4	3	2	1	5	4	3	2	1
	2차평정자 (30%)		탁월	우수	보통	미흡	불량	탁월	우수	보통	미흡	불량	탁월	우수	보통	미흡	불량	탁월	우수	보통	미흡	불량
			5	4	3	2	1	5	4	3	2	1	5	4	3	2	1	5	4	3	2	1
	확인자 (30%)		탁월	우수	보통	미흡	불량	탁월	우수	보통	미흡	불량	탁월	우수	보통	미흡	불량	탁월	우수	보통	미흡	불량
			5	4	3	2	1	5	4	3	2	1	5	4	3	2	1	5	4	3	2	1
	평 정 점																					

2. 직무수행태도평정 감점 해당사항(평정대상기간중의 것만 기재)

○ 지 각()회 - 감점 2점	○ 경고 또는 주의()회 - 감점 5점
○ 무 단 결 근()일 - 감점 5점	○ 대 민 불 친 절()회 - 감점 3점
○ 무 단 조 퇴()회 - 감점 3점	
○ 장시간무단이석()회 - 감점 3점	

② 직무수행태도(10%)	기준점 : 10점	감 점 : 점	평정점 : 점
---------------	-----------	---------	---------

3. 종합 평정점

종합 평정점 (평정점 합계 ①+②)	점
---------------------	---

4. 종합평정 의견

1차 평정자 의 견			
	직위 :	성명 :	(인/서명)
2차 평정자 의 견			
	직위 :	성명 :	(인/서명)
확인자			
	직위 :	성명 :	(인/서명)

개 정

[별지 제3호 서식]

기간제 및 전환근로자 근무성적 평정서

● 평정대상자

소 속	성 명	생년월일	담당업무	현 계약일	계약 만료일

1. 근무성적 평정(90%)

- ※ 업무목표의 달성도와 앞쪽의 기재사항 및 평소관찰결과 등을 토대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다음과 같이 평정점을 부여합니다
- 각 평정요소별로 탁월·우수·보통·미흡·불량의 5단계로 평정함.(해당란에 ○표)
 - 직무수행태도는 만점을 부여한 뒤 임용권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평정자가 감점 평정함

① 근 무 성 적 (90%)	평정요소		실 적 의 질					실 적 의 양					적 시 성					업 무 개 선 도				
	평정점		탁월	우수	보통	미흡	불량	탁월	우수	보통	미흡	불량	탁월	우수	보통	미흡	불량	탁월	우수	보통	미흡	불량
	1차평정자 (30%)		7.5	6.0	4.5	3.0	1.5	7.5	6.0	4.5	3.0	1.5	7.5	6.0	4.5	3.0	1.5	7.5	6.0	4.5	3.0	1.5
	2차평정자 (30%)		7.5	6.0	4.5	3.0	1.5	7.5	6.0	4.5	3.0	1.5	7.5	6.0	4.5	3.0	1.5	7.5	6.0	4.5	3.0	1.5
	확인자 (30%)		7.5	6.0	4.5	3.0	1.5	7.5	6.0	4.5	3.0	1.5	7.5	6.0	4.5	3.0	1.5	7.5	6.0	4.5	3.0	1.5
평 정 점																						

2. 직무수행태도평정 감점 해당사항(평정대상기간중의 것만 기재)

○ 지 각()회 - 감점 2점	○ 경고 또는 주의()회 - 감점 5점
○ 무 단 결 근()일 - 감점 5점	○ 대 민 불 친 절()회 - 감점 3점
○ 무 단 조 퇴()회 - 감점 3점	
○ 장시간무단이석()회 - 감점 3점	

② 직무수행태도(10%)	기준점 : 10점	감 점 : 점	평정점 : 점
---------------	-----------	---------	---------

3. 종합 평정점

종합 평정점 (평정점 합계 ①+②)	점
---------------------	---

4. 종합평정 의견

1차 평정자 의 견			
	직위 :	성명 :	(인/서명)
2차 평정자 의 견			
	직위 :	성명 :	(인/서명)
확인자			
	직위 :	성명 :	(인/서명)

관계법령 발췌서

□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3조

제43조(유산·사산휴가의 청구 등)

③ 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유산·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·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.

1.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(이하 “임신기간”이라 한다)이 11주 이내인 경우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
2.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
3.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
4.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
5.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: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